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방향

-일본 입법례를 중심으로-

최수정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법학박사)

2025.5.16.



01 들어가며

기업승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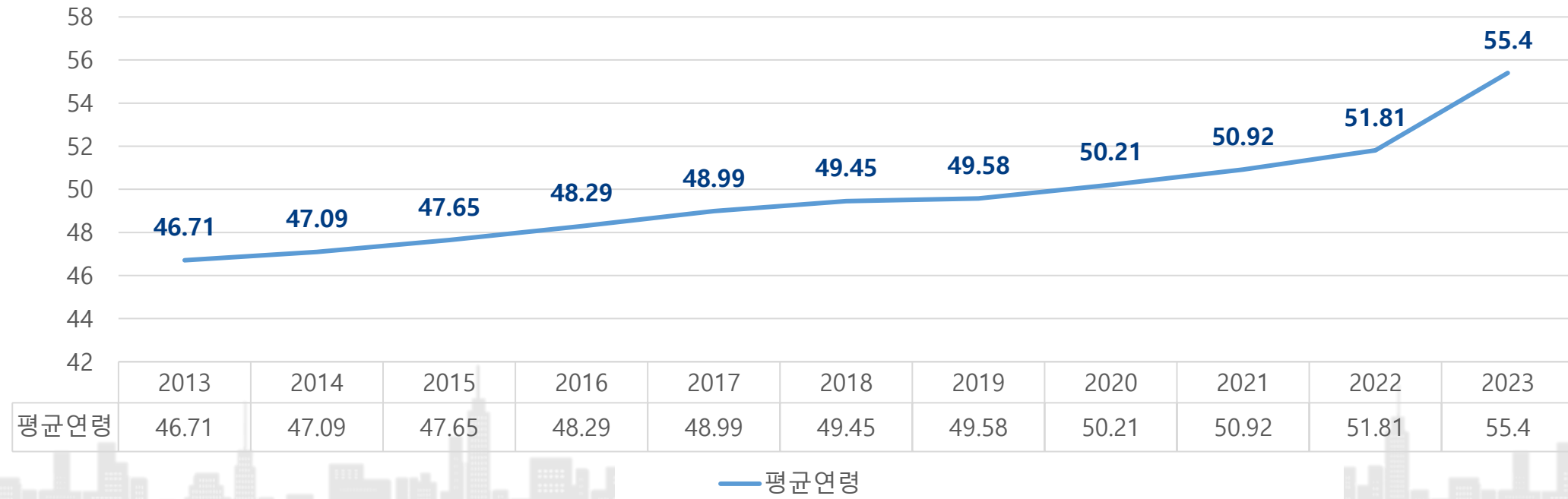
- 기업승계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
 - 이때 기업승계는 단순히 재산으로서의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이념, 가치관 등 무형자산까지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임
 - 일본과 영국에서는 주로 '사업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제도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라는 용어 사용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은 "가업승계"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승계 형태를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함

01 들어가며

중소기업 승계의 구조적 위기

- 경영자의 고령화 심화 (출처: 2024 「중소기업실태조사」)
 - 2023년 중소제조업 CEO 평균연령은 **55.4세**
 - 경영자 평균 연령 변화: 2013년 46.7세 → 2023년 55.4세 (CAGR 1.72%)

CEO 평균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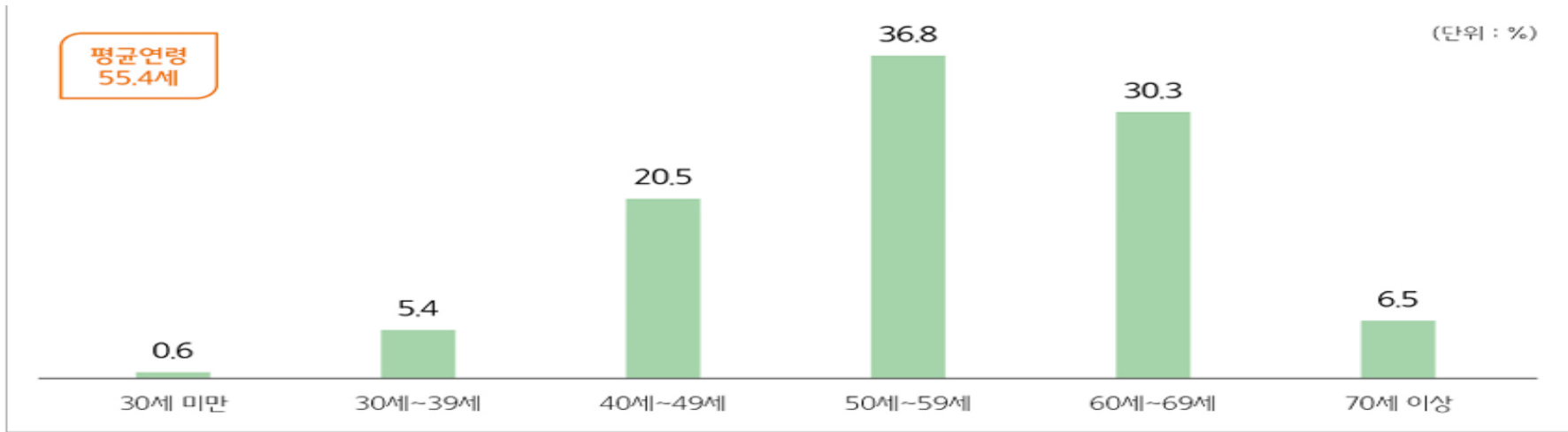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4)

01 들어가며

■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구조적 위기

- 경영자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8%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30.3%, '40대'가 20.5%, '70대가 6.5%
- 연령 60세 이상 대표자 수의 증가 추세는 기업승계가 조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60세 이상 대표자 수가 2013년 21.4% 비중 → 2023년 36.8%(CAGR 5.57%)로 예년보다 가파르게 증가
 - 비교: 2013-2022년 60세 이상 대표자 비중의 CAGR은 4.1%



주 : 평균연령 = 2023년 - 출생년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4)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중소기업 승계 관련 현행 법률

법률	내용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및 지정 취소 규정, 후계인력 양성 및 전통 기술 보존·전수 지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가업상속공제제도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 친족 등에게 기업을 승계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최대 공제한도는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으로 확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등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근 개정으로 요건 완화
 -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상속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됨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가업상속공제제도

-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등 지분의 일정 부분을 10년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 주식 보유 기준은 기존 50%에서 40%로 완화됨(상장법인 30%→20%)
 -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그 기간 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던 것이 대분류까지 확대됨
- 5년간 가업용 자산 처분이 20% 이상에서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범위가 확대
- 고용유지 요건도 7년 동안 평균 100%를 유지해야 했던 것이 5년 동안 평균 90%로 완화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가업상속공제제도

구분	내용
개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친족 등에게 승계 시 공제 혜택
공제 한도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적용 요건	피상속인 지분 보유 40%(상장 20%), 대표이사 요건 완화
사후관리 요건	사후관리 기간: 7년 → 5년, 고용유지 요건: 90% 유지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하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
 - 2007년 12월 31일 신설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확대
 - 기존 최대 100억 원으로 단일 적용하였던 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동일하게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60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일반적인 증여와의 차이점은 10~50%의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 또는 20%의 증여세 부담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가업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등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요건	기준	내용
가업	계속 경영 기업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독립성 기준을 충족 [개정] 매출액의 평균금액(3개 연도) 5천억 원 미만
증여자	가업종사	가업을 10년 이상 최대주주로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 부모
	주식보유	[개정]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수증자	연령	18세 이상
	취임기준	[개정]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및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자료: 국세청(2023), p. 22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가업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등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위반 요건 내용
• [개정]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 [개정]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정]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단,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나 상장요건에 따른 처분은 제외)
•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단, 시설투자·사업규모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특수 관계자 외의 자에게 신주배정하기 위해 실권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 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자료: 국세청(2023), pp. 62~63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상증세법 제71조)
 -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지만, 가업 상속재산의 경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최장 10년에서 20년(거치기간 포함)까지 확대
 - 거치기간도 기존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거치기간은 없음
- 2022년까지는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20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재산 비중과 상관없이 연부연납 기간을 단일화

		2008~2022년	2023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10년간 분할 납부(3년 거치 가능)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 20년간 분할 납부(5년 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가업상속재산 비중 관계없이 20년간 분할 납부(10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간 분할 납부(2022년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분할 납부 거치기간 없음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주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 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하지 않는 제도
 -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에게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했는데, 이번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외에도 상속·증여받기 직전 3개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도 상속·증여 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에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증여분에 대해 납부만 유예해 주는 제도
 -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상속자(수증자)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증여세 납부유예 경우는 가업 주식의 증여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은 활용할 수 없음
-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에 비해 의무 준수 요건이 상당 부분 완화
 - 사후관리 기간은 가업상속공제제도 등과 동일하게 5년이고, 이 기간 동안 가업요건과 지분요건을 준수해야 하나, 업종 변경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은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중 하나는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납부유예제도에서는 이 둘 중 하나의 요건을 70% 이상만 유지하면 됨
-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이 당장의 세금 문제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게 하기보다는 납부를 유예해 주면서 그 기간 동안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2024년 세법 개정안

- 대상 기업 및 공제 한도 상황
 - 기존에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가 기존 대비 2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 10년 이상: 300억 원 → 600억 원
 - 20년 이상: 400억 원 → 800억 원
 - 30년 이상: 600억 원 → 1200억 원
-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공제가 가능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

-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관련 공제·특례 요건 및 사후관리 의무가 대폭 완화됨
 - 공제 요건 완화와 사후관리 의무 축소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요건 준수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데 긍정적인 환경 조성
 - 대표적으로 공제한도의 상향(최대 600억 원), 고용 유지 기준 완화(5년간 평균 90%),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대분류 내)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완화는 특히 승계 과정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상속·증여 외에도 납부유예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경영상황에 따라 세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음
- 납부유예제도는 고용 유지 기준 70% 등 비교적 완화된 의무 준수 요건으로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확대
- 기존 매출 3천억 원 미만 기준이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기업 승계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중소기업진흥법상 가업승계 지원

- 중소기업진흥법 내 가업승계 지원 규정
 - 2007년 12월 27일 신설중소기업의 기술·인력·경영권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
- 중소기업진흥법상 중소기업자의 정의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③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통령령 기준)
 - ④ 기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 중소기업진흥법상 "가업승계"의 법적 정의
 -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소유권·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
 - 업종·고용·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가업승계 범위 제한적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중소기업진흥법상 가업승계 지원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관련 규정 (제7절)
 - 가업승계 지원 (제62조의2)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제62조의3)
 -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62조의4)
 -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62조의5)
 - 명문장수기업 확인 취소 (제62조의6)

중소기업진흥법이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관련 규정이 5개에 불과해 가업승계 지원 범위가 제한적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소상공인법상 사업승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백년소상공인의 정의 및 사업승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백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승계를 위한 지원 규정 포함
- 사업승계의 정의
 - 소상공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해 영업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기준 설정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지원 가능
 - 사업승계를 통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 촉진
- "소상공인법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과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02 중소기업 기업승계 제도 현황

| 현행 제도와 법적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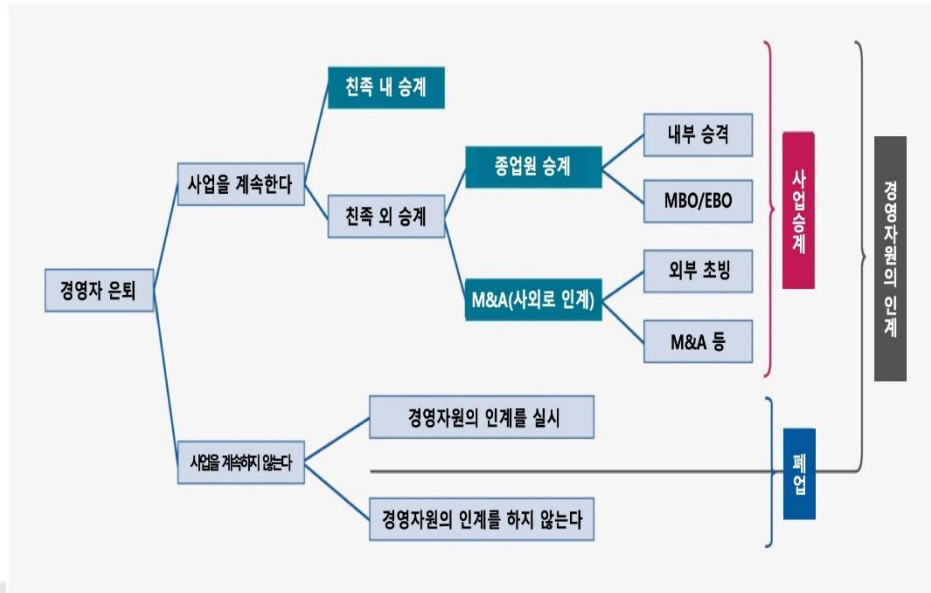
- 상속세 중심의 정책 대응
- 제도 간 연계 부족
- 통합적 지원 시스템 부재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개관

- 사업승계란 일본 중소기업청 '정책대상'으로서 기업의 정신과 기술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것을 정의
- 일본의 사업승계는 누가 승계하느냐에 따라서 친족 내 승계, (친족 이외의) 직원 승계, M&A(社外로의 인계)로 유형이 나누어짐

[일본 사업승계의 유형]



유형	내용
친족 내 승계	현 경영자의 자녀를 포함한 친족에게 승계
직원 승계	친족 이외의 직원에게 승계
M&A(사외로의 인계)	社外の 제3자(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등)에게 주식양도나 사업양도에 의해 승계

자료: 중소기업청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일본의 사업승계 관련 연혁

- 2003년: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도입
- 2005년: 지역 금융기관과 '사업계속펀드' 공동 조성
- 2008년: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
- 2009년: 사업승계세제 도입 및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개정
- 2017년: '사업승계보조금' 제도 운용 시작
- 2019년: '경영자 보증 가이드라인' 특칙 제정, '제3자 승계 종합 패키지' 수립
- 2020년: 「중소 M&A 가이드라인」 공표, 「중소기업성장촉진법」 시행
- 2021년: 승계·인계지원센터 설립, M&A 중개업 등록 의무화, 세제개편
- 2023년: 「중소 M&A 가이드라인(제2판)」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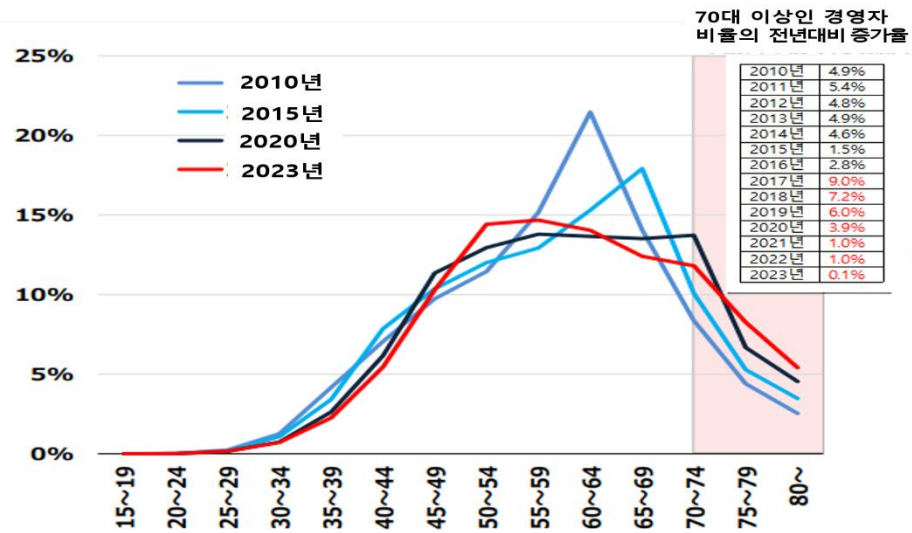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사업승계 환경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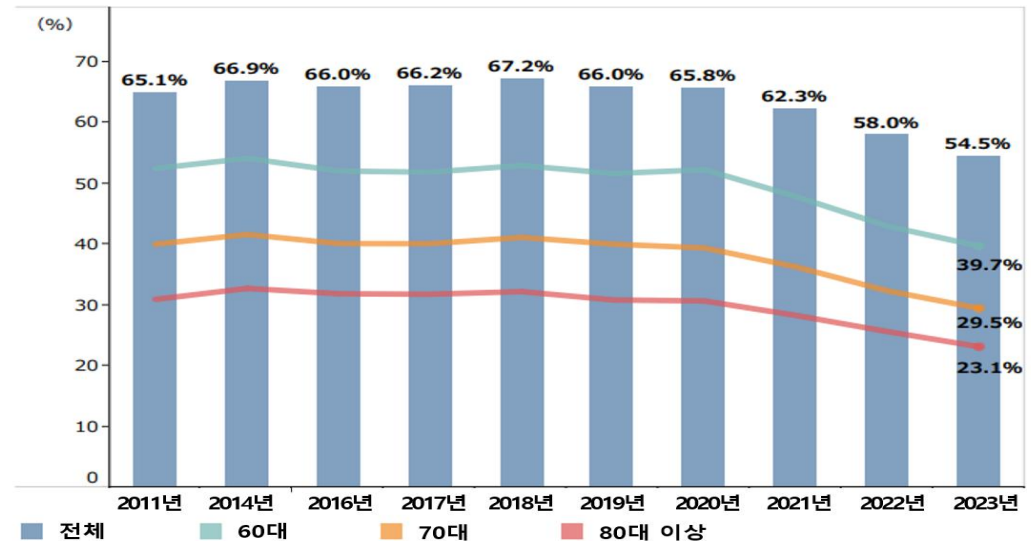
- 후계자 부재로 인한 폐업 등의 발생
- 흑자 폐업 비율이 절반을 넘는 상황. 또, 폐업할 예정의 기업에 폐업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후계자 부재에 의한 폐업이 약 30%를 차지

[경영자 연령 비율의 변화]



자료: 중소기업청(2024) 중소기업백서 p.108

[중소기업에서의 후계자 부재율 추이(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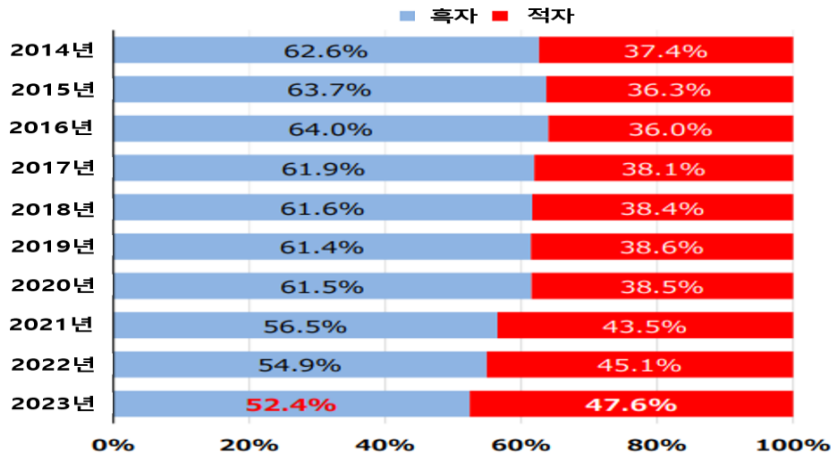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2024) 중소기업백서 p.109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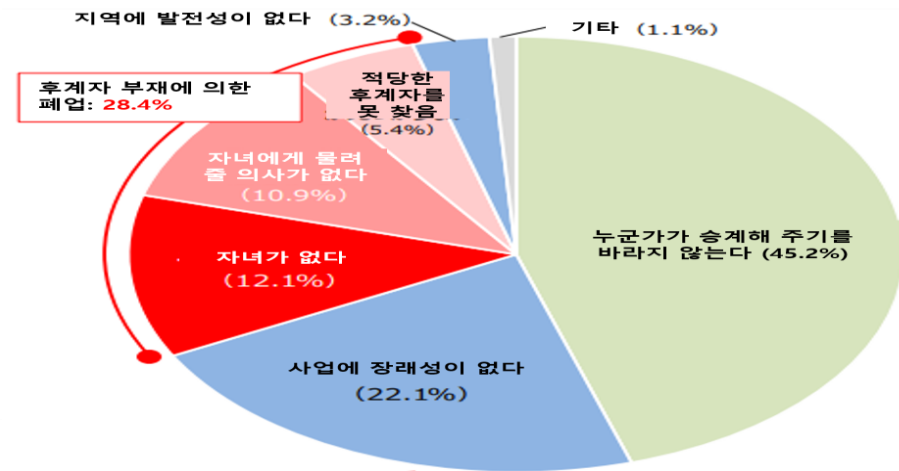
후계자 부재로 인한 폐업 등의 발생

- 현재 잠정적으로 경영자 연령의 분포가 평준화되고 있지만, 과반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후계자가 부재하고, 후계자가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승계의 과제를 안고 있는 기업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본은 미국 독일 한국과 비교해 50대 이하의 비율이 낮고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음

[휴폐업·해산사업자의 손익별 비율]



[폐업 사유(폐업예정기업,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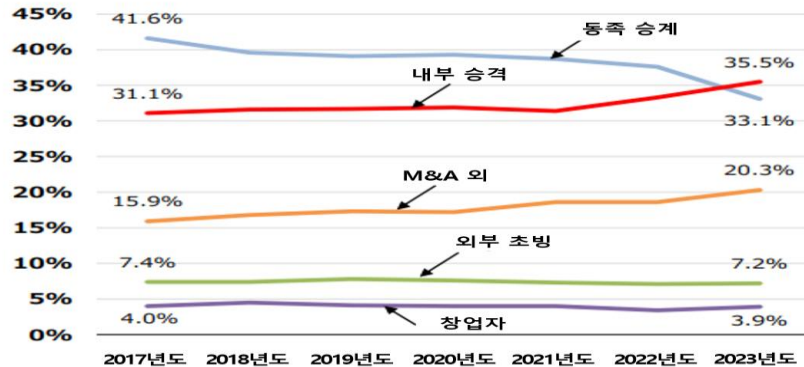
자료: (주)도쿄 상공 리서치 조사, 일본 정책 금융 공교 종합 연구소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에 관한 인터넷 조사(2023년 조사)」를 기본으로 작성
 주: 「휴폐업·해산」은, 도산(법적 정리, 사적 정리) 이외로 사업 활동을 정지한 기업. 오른쪽 그림의 응답수: 2,491자.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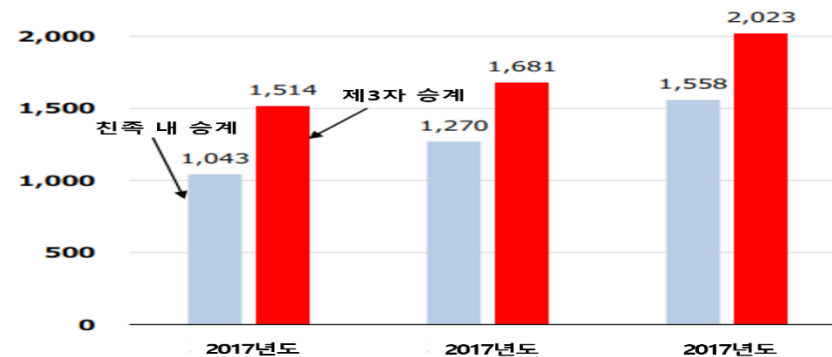
친족 내 승계와 종업원 승계·제3자 승계 동향

- 친족 내 승계 감소
 - 과거 대비 가족 내에서 후계자를 지정하는 사례 감소
 - 내부승격 및 M&A 승계 증가
 - 내부 핵심 인력의 경영자 승격 사례 증가
 - M&A를 통한 외부 인수·합병 방식의 승계 확대
- 친족 내 승계뿐만 아니라 제3자 승계(외부 승계)도 증가하는 추세

[경영자 취임 경위]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 지원 완료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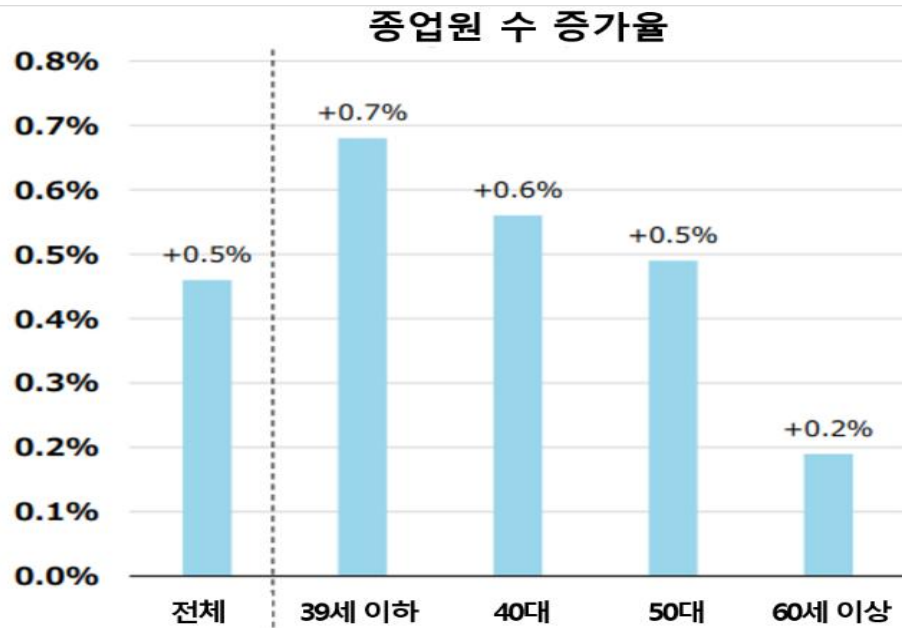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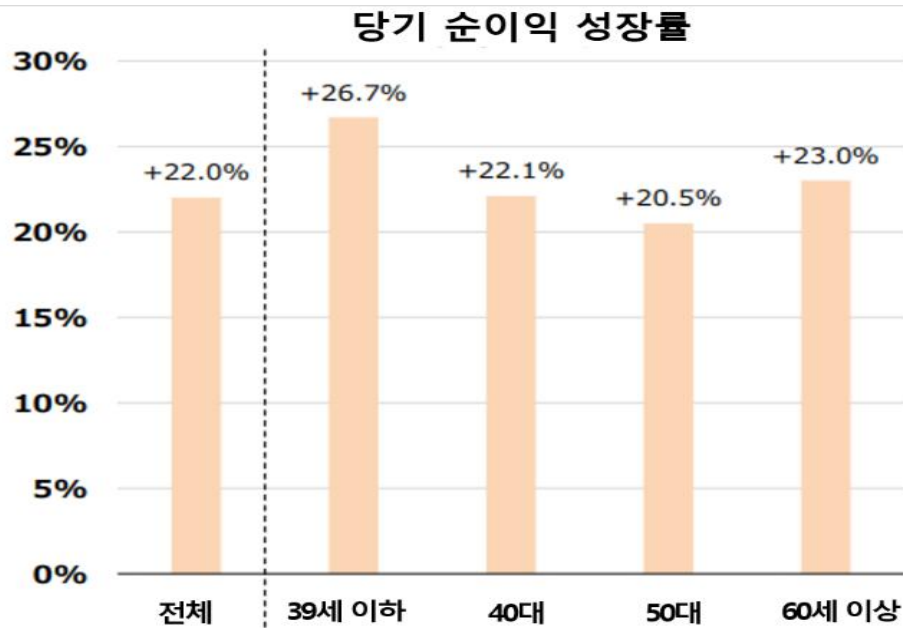


자료: (주)도쿄 상공 리서치 조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 종합 연구소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에 관한 인터넷 조사(2023년 조사)」를 기본으로 작성
 주: 「휴폐업·해산」은, 도산(법적 정리, 사적 정리) 이외로 사업 활동을 정지한 기업. 오른쪽 그림의 응답수: 2,491자.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친족 내 승계와 종업원 승계·제3자 승계 동향

- 사업승계 시 후계자의 연령과 중소기업 실적의 관계
- 사업승계 시의 성과 분석 결과, 사업승계 시의 연령과 관계없이, 사업승계 후의 당기 이익이나 종업원 수의 성장률이 동업종 평균치보다 높음
- 또한 게다가 후계자 연령이 젊을수록, 동업종 평균보다 높은 경향



(주)2010년~2015년에 경영자 교대를 1회 실시하고 있어 경영자 교대로부터 그 후 5년간의 매출고, 당기 순이익, 종업원수의 수치를 관측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

당기순이익 성장률, 종업원 수 성장률이 95퍼센트 이상 또는 5퍼센트 이하인 관측치는 벗어난 값으로 제외.

(출처) 김규판, 중기연 전문가자문회의 자료집(2024)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경영승계원활화법

- 일본은 후계자 부재에 따른 중소기업 도산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고, 특히 후계자 부재로 인한 도산 건수가 2023년에는 509건에 달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의 경감과 민법상 유류분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사업승계원활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경영승계원활화법(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이 2008년 5월에 제정
- 광역자치단체장의 인정(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계획안('특례승계계획')에 대해 민법상 유류분 특례, 상속·증여세에 대한 납세유예 특례조치, 소재불명주주에 관한 회사법 특례 등의 전제가 되는 경제산업대신의 인정과 금융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음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경영승계원활화법

목차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목적 - 정의
제2장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제3조-제11조)	- 정의 - 회사사업 후계자가 취득한 주식 등 또는 개인사업 후계자가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관한 유류분 산정에 관한 합의 등 - 회사사업 후계자가 취득한 주식 등 이외의 재산 또는 개인사업 후계자가 취득한 사업용 자산 이외의 재산에 관한 유류분 산정에 관한 합의 - 추정상속인과 회사사업 후계자 또는 개인사업 후계자 간의 형평 및 추정상속인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합의 - 경제산업대신의 확인 - 가정재판소의 허가 - 합의의 효력 - 합의 효력의 소멸
제3장 지원조치 (제12조-제16조)	- 경제산업대신의 인정 -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및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법의 특례 - 소재 불명 주주의 주식 경매 및 매각에 관한 특례 - 지도 및 조언 등
제4장 잡칙 (제17조-제18조)	-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 권한의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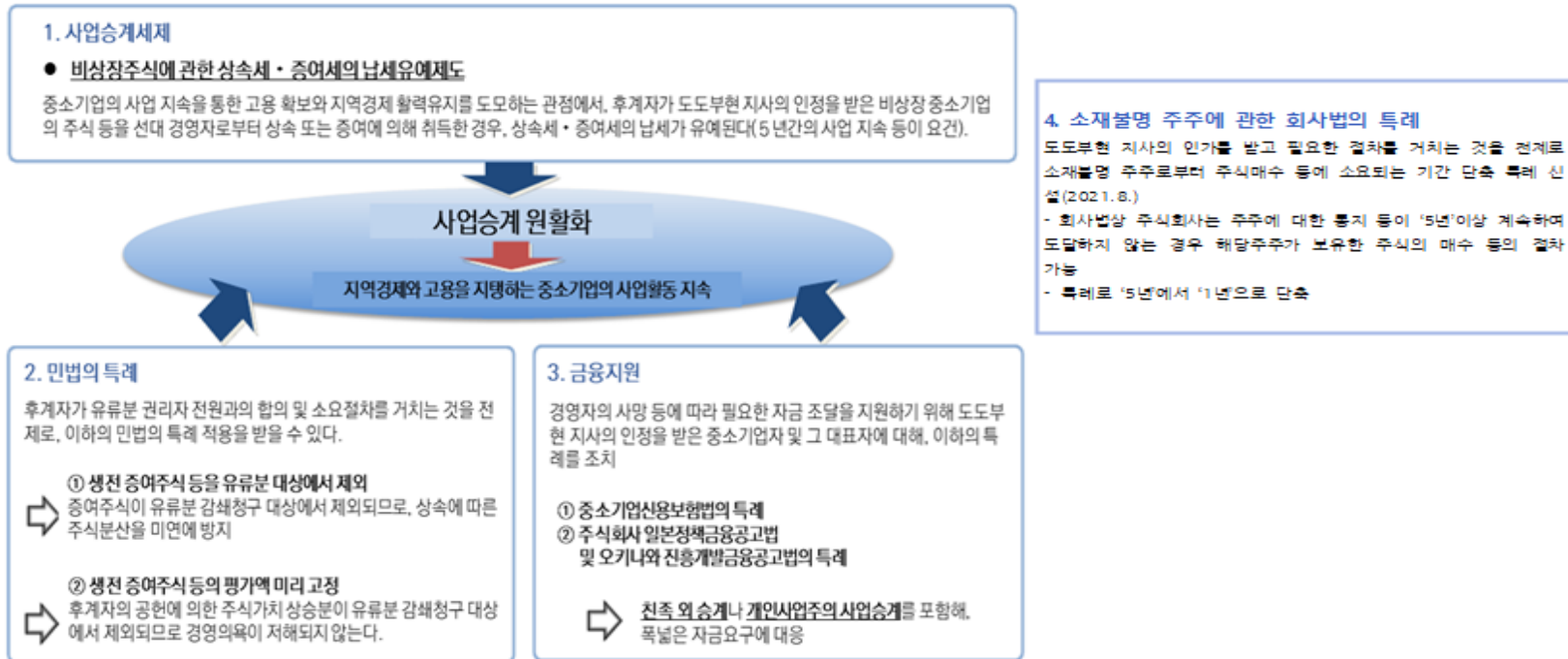
자료: 법령검색사이트(elsaws.e-gov.go.jp)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경영승계원활화법

- 사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의 경감과 민법상 유류분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사업승계원활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경영승계원활화법」이 2008년 5월에 제정됨
 - 민법상 유류분 특례, 상속·증여세에 대한 납세유예 특례조치 등의 전제가 되는 경제산업대신의 인정과 금융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음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 사업승계 세제

- 사업승계 세제는 「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한 인정 하에, 회사와 개인사업자의 후계자가 취득한 일정의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 사업승계 세제는 회사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판 사업승계 세제'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판 사업승계 세제'로 구성
- 활용에 있어서는 특례 승계계획·개인 사업승계계획 제출이 필요하지만, 2024년도 세제 개정으로 인해 계획 제출기한이 2년 연장되어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 가능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사업승계 세제

구분	법인관	개인관
사전계획 수립	특례 승계계획서 제출 (2018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 이내 개인사업 승계계획서 제출 (2019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10년 이내 증여-상속 등 2018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0년 이내 증여-상속 등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자산	비상장주식 등	특정사업용 자산
납세유예 비율	100%	100%
승계 패턴	복수의 주주로부터 최대 3명의 후계자	선대 한명에서 후계자 한명 (일정한 경우 동일생계친족에서도 가능)
증여요건	일정액 이상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후계자 1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2/3)	해당 사업에 관한 특정사업용 자산
고용 보장 요건	있음(특례조치에 의해 예외 인정)	고용 요건 없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면 등	있음	있음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 법인판 사업승계 세제

- 법인판 사업승계 세제는 후계자가 있는 수증자(受贈者)·상속인 등이 원활화법 인정을 받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증여나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비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그 납세를 유예하고 후계자 사망 등에 의해 납세가 유예되고 있는 증여세·상속세 납부가 면제되는 제도
 -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2018년 4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지사에게 특례승계계획을 제출한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10년간 실제로 주식을 후계자에게 승계해야 함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법인판 사업승계 세제

	특례조치	일반조치
사전 계획 책정	특례승계계획 제출 2018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불필요
적용기한	10년 이내의 증여·상속 등 2018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없음
대상 주주 ※의결권 주식에 한하다	주식 전체	총 주식 수의 최대 3분의 2까지
납세유예비율	100%	증여 : 100% 상속 : 80%
승계 패턴	복수의 주주로부터 최대 3명의 후계자	여러 주주 중 한 명의 후계자
고용 확보 요건	탄력화	승계 후 5년간 평균 80%의 고용 유지 필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면제	있음	없음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 개인판 사업승계 세제

- 후계자가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인정을 받아 특정 사업용 자산 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기구 비품 등을 증여 또는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 대해 2019년도 세제개정에서 10년간의 특례조치로서 그 특정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의 전액을 유예
 -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에게 개인사업 승계 계획을 제출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을 후계자에게 승계해야 함
- 개인판 사업승계 세제 창설로 인해 ① 다양한 사업용 자산과 ② 친족 외로의 승계도 납세 유예 대상이 되었으며, ③ 납세 면제 대상과 ④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감면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세부담과 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개인판 사업승계 세제

- 후계자가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인정을 받아 특정 사업용 자산 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기구 비품 등을 증여 또는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 대해 2019년도 세제개정에서 10년간의 특례조치로서 그 특정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의 전액을 유예
 -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에게 개인사업 승계 계획을 제출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을 후계자에게 승계해야 함
- 개인판 사업승계 세제 창설로 인해 ① 다양한 사업용 자산과 ② 친족 외로의 승계도 납세 유예 대상이 되었으며, ③ 납세 면제 대상과 ④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감면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세부담과 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

	개인판 사업승계 세제
사전 계획 책정	개인판 사업승계 계획 제출 2019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10년 이내의 증여·상속 등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세 유예 비율	100%
대상 자산	택지 등(400㎡까지) 건물(바닥면적 800㎡까지) 일정한 감가상각 자산

자료: 중소기업청(2024)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유류분 특례

-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후계자가 유류분 권리자 전원과의 합의 및 필요한 절차(경제산업대신의 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침으로써 민법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후계자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 등을 유류분 관련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에 따른 주식분산을 미연에 방지하게 함(제외 합의)
 - 후계자의 공헌에 의한 비상장주식 등의 가치의 상승분을 유류분과 관련되는 청구 대상 외로 하는 것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을 걱정하는 일 없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고정 합의, 개인사업은 불가)
- 2019년 「경영승계원활화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후계자에게 증여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됨 특례조치가 신설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금융지원

- 신용력 저하에 따른 경영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협회 보증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인정을 전제

	필요한 자금의 유형	지원대상자	지원형태	
			용자	신용보증
1	경영을 승계한 후에 필요한 자금 - 후계자가 자사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 후계자가 상속과 증여에 의해 자사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증여세 납세자금 - 구입처의 거래조건과 거래처 금융기관의 차입조건이 까다로워져 필요한 자금(※) (※) 신용보증만 등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대표자	○	○
2	앞으로 다른 중소기업자의 경영을 승계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앞으로 M&A를 통해 타사 주식 및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등 [2018년 7월 신설]	(앞으로 다른 중소기업자의 경영을 승계하려는) 중소기업		○
		(앞으로 다른 중소기업자의 경영을 승계하려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	○
3	인정일로부터 경영 승계일까지의 사이에 현 경영자의 보증이 붙어있는 차입을 다시 빌리기 위한 자금(경영자 보증은 불필요) [2020년 10월 신설]	중소기업 [회사]		○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정부 사업승계지원사업(사업승계·인계센터)

- 「산업경쟁력강화법」 제127조 기반, 2011년 설립
- 설립 목적
 - 후계자 부재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의 제3자 인계를 지원
 -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사업인계지원센터 설치
- 2014년: 후계자부재 영세사업자와 창업희망자 매칭 사업 (후계자인재뱅크) 개시
- 2021년: 기존 사업승계 지원 조직과 통합하여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 출범
- 지원 기능
 - 원스톱 지원: 사업승계 진단, 계획 수립, 양도-양수 매칭
 - M&A 지원: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M&A 전문업체 및 금융기관과 협력
 - 전문가 네트워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소기업진단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풀 운영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정부 사업승계지원사업(사업승계·인계센터)

- 지원 대상 및 주요 기능
 - 친족 내 승계: 친족 및 종업원에게 원활한 승계 지원 (승계계획 수립 등)
 - 제3자 승계 (M&A): 후계자 부재 기업을 위한 양수·양도 매칭
- M&A 지원 구조
 - 양도기업: 연 매출 5억 엔 이하 기업이 95% 차지
 - 양수기업: 연 매출 5억 엔 이상 기업이 30% 차지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 증가)M&A 전문 업체 및 금융기관 협력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정부 사업승계지원사업(사업승계·인계센터)

- 전문가 네트워크
 -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소기업진단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풀 운영
- 주요 상담 내용
 - 기업승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 후계자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 후계자가 없을 경우 대안적인 기업승계 방안
 - M&A 상대 기업 추천 및 매칭 서비스
-  성과: 2023년 기준 M&A 계약 체결 2,000건 돌파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정부 사업승계지원사업(사업승계·인계센터)

- 전문가 네트워크
 -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소기업진단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풀 운영
- 주요 상담 내용
 - 기업승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 후계자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 후계자가 없을 경우 대안적인 기업승계 방안
 - M&A 상대 기업 추천 및 매칭 서비스
-  성과: 2023년 기준 M&A 계약 체결 2,000건 돌파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M&A 지원기관

- 사업승계 및 인계 보조금 (전문가 활용형)
 - M&A 지원기관 활용 비용 지원 (중개수수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FA) 비용 등)
 - 보조 대상: 등록된 M&A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 한정
- 중소기업청의 M&A 지원제도 정비
 - 2021년 8월 - 'M&A 지원기관 등록제도'(등록제도) 신설
 - 등록 희망기관 요건: '중소 M&A 가이드라인' 준수 선언 필수
 - 보조금 지급 요건: 등록제도에 등록된 M&A 지원기관 활용 필수
 - 목적: 중소 M&A 가이드라인 행동방침의 보급·정착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M&A 지원기관

- 등록된 M&A 지원기관 현황 (2024년 8월 기준)
 - 총 2,766건 등록 (법인 2,083개, 개인사업자 683명)
 - ✓ M&A 전문업체 (중개회사 645건, FA 342건)
 - ✓ 컨설팅회사 1,085건 (35.6%)
 - ✓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단사 등 전문가 433건 (15.6%)
 - ✓ M&A 지원 등록기관의 설립연도를 보면 최근 일본의 중소M&A시장의 '열기'를 반영하여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설회사가 1,482개로 절반을 넘음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정부 사업승계지원사업 체계

승계 준비

○ 필요성 자각

사업승계진단

사업승계 네트워크
(지역금융기관·상공단체·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는 업계단체 등)

에 의한 푸시형 사업
승계 진단에 의해
사업승계·인계 과제를
발굴, 연계 지원

원활한 승계

○ 사업승계 상담/M&A 매칭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

각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에서 사업승계 상담, M&A와 관련된 매칭지원 등을 실시

○ 사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납세유예

사업승계 세제(법인판, 개인판)

- 사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전액 납세 유예.
- 2024년 세제개정으로 특례 승계 계획의 신청 기한을 2026년 3월 말로 연장

○ M&A 시 비용부담 경감

사업승계·인계 보조금(전문가 활용)

- M&A 시 전문가 활용(중개 수수료, DD 비용 등)을 지원(보조 상한 600만엔, 보조율 1/2~2/3)
- FA/중개비용은 M&A 지원기관 등록제도에 등록된 FA/중개업자 지원 관련 비용만 보조 대상

○ M&A 후 리스크에 대한 대비

중소 M&A 준비금, 중견·중소 그룹화 세제

- M&A 후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M&A 투자액의 70%까지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거치기간 5년)
- 2024년 세제 개정에서 중견중소기업의 그룹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번의 M&A를 실시하는 경우의 적립률을 2회차 90% 3회차 이후 100%로 확대하는 범위를 창설(거치기간 10년)

○ M&A 시 사업승계·M&A 후 금융지원, 재무기반 강화

공고를 통한 금융지원, 경영자 보증해제 지원

- 공고에 의한 사업 승계·M&A에 관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용자 한도액이나 거치 기간 등에 대해서 확충
- 승계원활화법에 의거한 신용보증 등의 특례, 투자육성에 의한 공동 M&A, 중소기업 그룹화사업재구축 지원 펀드에 의한 지원

승계 후 경영혁신 등

○ M&A 후 설비투자 등

사업승계·인계보조금(설비 투자, 판로 개척 등)

사업승계 및 M&A 후 설비투자, 판로개척 등 지원
(보조 상한 800만엔, 보조율 1/2~2/3)

중소기업 경영강화 세제(D유형)

M&A 관련 투자액의 10%를 세액 공제 또는 즉시 상각

(범례)

- 사업승계와 M&A에 모두 적용
- 사업승계에만 적용
- M&A에만 적용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M&A 지원기관

- 등록된 M&A 지원기관 현황 (2024년 8월 기준)
 - 총 2,766건 등록 (법인 2,083개, 개인사업자 683명)
 - ✓ M&A 전문업체 (중개회사 645건, FA 342건)
 - ✓ 컨설팅회사 1,085건 (35.6%)
 - ✓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단사 등 전문가 433건 (15.6%)
 - ✓ M&A 지원 등록기관의 설립연도를 보면 최근 일본의 중소M&A시장의 '열기'를 반영하여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설회사가 1,482개로 절반을 넘음



03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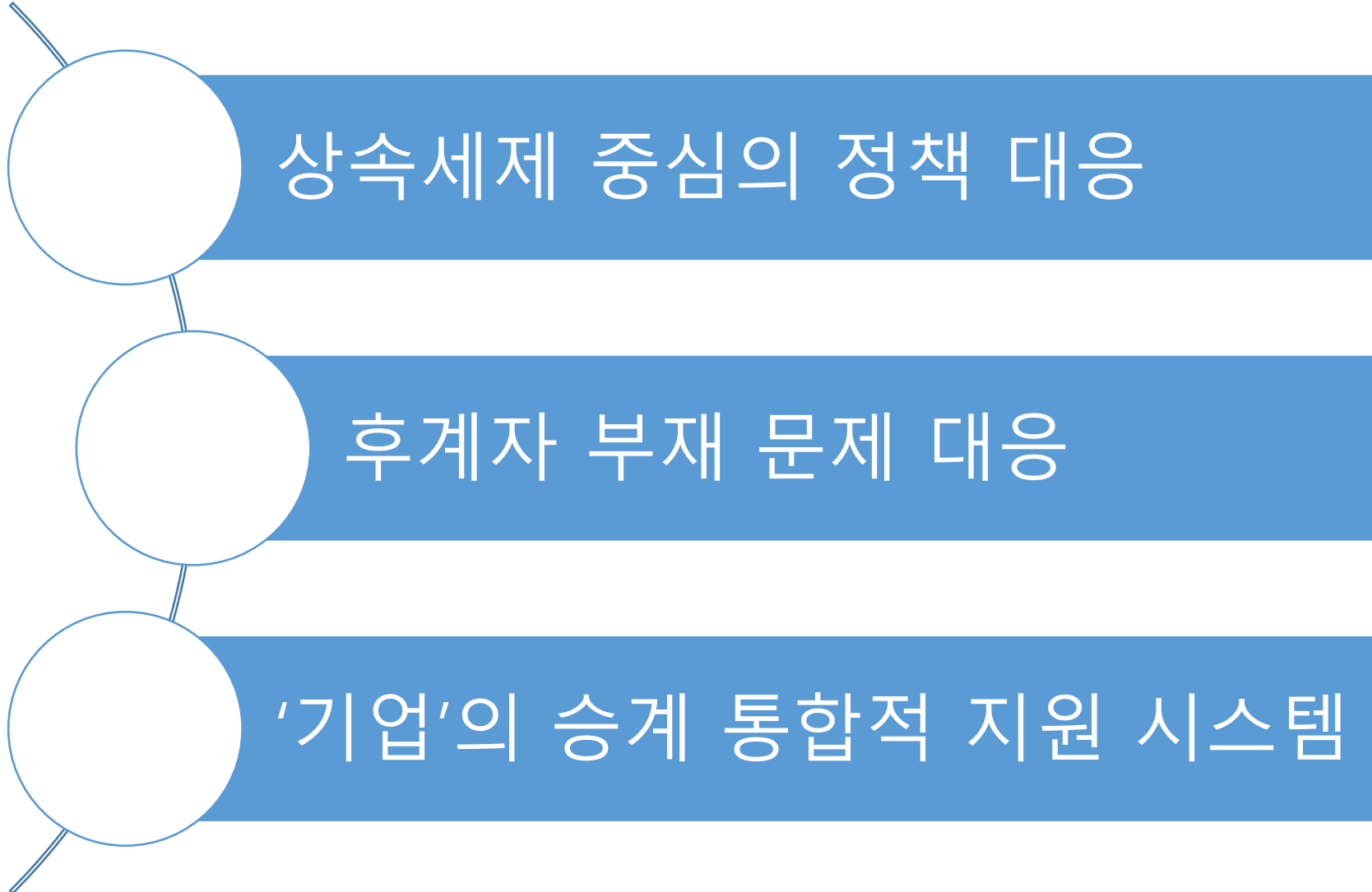
■ 시사점

- 통합적 접근 필요
- 세제-금융-인재 매칭 연계
-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



04 중소기업 승계지원 법제의 한계

현행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주요 쟁점



04 중소기업 승계지원 법제의 한계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

-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제도의 포괄적 완화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고 국내 고용과 지역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가업승계 제도는 친족(주로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승계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 존재
 - 경영 의지가 없거나 자질이 부족한 자녀에게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기업 외부의 전문 경영인이나 이해관계자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승계 이후 경영 혁신과 성장이 제한될 우려 존재
 -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이 친족 승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04 중소기업 승계지원 법제의 한계

현행법상 한계

- 체계적·종합적 지원 부족
 - 「중소기업진흥법」은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으나, 단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이 간소하고, 세제지원, 지원센터 지정, 명문장수기업 확인 등에 국한됨.
 - 가업승계 관련 법체계가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함.
- 제한적인 가업승계 정의
 - 「중소기업진흥법」상 가업승계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소유권 및 경영권 이전에 한정되어 있음
 - 업종, 고용, 기업 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에 필요한 포괄적 승계 방안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한계

04 중소기업 승계지원 법제의 한계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

- 제도화된 지원 플랫폼 필요
- 일본의 「경영승계 원활화법」은 민법상 유류분 특례를 규정하고, 자금 공급의 원활화 등 종합적 지원 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 법제는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조달, 법적 갈등 등 기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 존재
-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전반적 체계를 수립하고,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입법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충실히 담을 필요가 있음

05 정책제언

개선방향

- 제도적 확대의 필요
 - 기업승계 지원대상을 종업원 승계 및 M&A 승계로 확대하고 세금 공제, 납부유예 등을 종업원 승계나 M&A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 승계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 기업승계 지원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종업원, 외부 경영인, M&A로 승계할 경우의 자문 및 절차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업승계의 방식의 친족 승계에서 M&A 승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05 정책 제언

개선방향

-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과제로 접근해야 함
 - 기업승계 성공 시: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부담 경감
 - 기업승계 실패 시: 기업 폐업 증가, 실업 문제 심화, 사회적 비용 상승
- 상속형·제3자형 기업승계 구분 지원
 - 친족 중심 승계 구조에서 탈피, 다양한 승계 방식 지원 필요종업원, 외부 경영인, M&A 승계까지 확대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제도 마련
 - 기존 세제 중심 지원을 넘어 후계자 양성, 법률·재정 자문, 경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포함
 -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재정적 장애물 최소화
 - 기업승계를 위한 종합적 지원기관을 통해 승계 전략 컨설팅 및 법적·재정적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
 - 인재 매칭 플랫폼 구축
 - 민간과의 협력관계 구축(M&A 전문기관 등)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

05 정책 제언

법적 기반 구축 방향

- 기업승계의 체계적·종합적 지원
 -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
 -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세제, 법적 분쟁, 기술 이전, 후계자 양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
- 중소기업 기업승계 개념의 재정립
 -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제한적인 승계 정의(상속, 증여 등)를 보완하여 양도, 합병, 기타 포괄적 경영승계 방식을 포함한 정의로 확대 필요
 - 일본의 「경영승계원활화법」처럼 경영승계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총망라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
- 민법상 유류분 특례 규정, 종업원 승계 및 임원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 필요
- 후계자 양성과 기술 계승 지원
 - 승계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전문 후계자 양성 및 승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법률에 명시

감사합니다